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과 국내 시사점

—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

박태준* · 박창욱**

<요 약>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유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 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주제어: FSMA, 전문직종사자, 전문직회사, 전문적서비스,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 면책조항, 공인전문직협회(RPBs), 지정전문직협회(DPBs)

논문접수일: 2016년 07월 08일 수정일: 2016년 0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22일

* 창신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tjpark@cs.ac.kr

**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교신저자), cwpark@ssc.ac.kr

I. 서 론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이하 FSMA)」¹⁾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가업자(authorized person) 또는 적용면제업자(exempt person)를 제외하고는 예금수취, 자산수탁, 위탁, 중개,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 등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와 같은 규제대상업무(regulated activities)를 수행할 수 없다.²⁾ 그러나 영국에서 변호사(lawyers), 회계사(accountants) 및 보험계리사(actuaries) 등 전문직종사자들(professions)과 이들이 설립한 전문직회사들(professional firms)은 경영자 혹은 임원의 주식매각에 대한 주선,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같은 금융투자업무(investment business)가 그들의 전문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³⁾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국의 금융 감독기구인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하 FSA)⁴⁾의 의견수렴보고서(consultation paper)⁵⁾에 따르면, 15,000개 전문직회사 중 13,000개가 본연의 업무보다는 부수적 업무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0개 전문직회사는 주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FSA는 이들 전문직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ur)을 부여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종사자 및 전문직회사들로 구성된 전문직협회들(professional bodies)은 영국 재무부(Treasury)로부터 지정을 받은 후, 해당 회원들(members)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exempt regulated activities)⁶⁾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정 전문직협회들(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 이하 DPBs)⁷⁾은 반드시 FSA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FSA 또한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온전하게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direction)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 FSMA 체계에서 전문직종사자 및 전문직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용면제조항, DPBs의 해당 회원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방법, FSA의 역할, 적용면제에 관한 공시, 인가받은 전문직회사 등에 관한 법적 규제를 고찰하고, 현재 국내 전문직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과 규제체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국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FSMA는 총 30 parts, 433개 조항(sections)과 22개의 부속조항(schedules)으로 구성되어 있다.

2) FSMA 제19조에 의하면, 일반적 금지(general prohibition)는 인가업자 또는 적용면제업자가 아닐 경우, 누구라도 영연방에서 규제대상업무를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할 수 없는 조항을 칭한다.

3) “전문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란 규제대상업무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서비스의 제공이 지정전문직협회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FSMA 제327조(8)항).

4) FSA는 독립된 비정부기구(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로 형식적으로 사법인(company limited by guarantee)이며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로 운영된다(FSMA 제1조).

5) FSA consultation paper 69, The Exempt Professional Firms Sourcebook, 2000, p.3.

6)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exempt regulated activities)”라 함은, 일반적 금지에 위반하지 않고 지정전문직협회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회원이 FSMA Part 20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규제대상업무를 말한다. 또한 전문직과 관련한 회원(member)이란 해당전문직을 행하는 자격이 있으며 또한 행하는데 있어 그 전문직과 관련한 단체의 회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그 단체의 규정에 따르는 자를 말한다(FSMA 제325조제(2)항).

7) FSMA Part 20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정된 전문직협회인 DPBs는 FSA에 인가될 필요가 없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FSA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할 수가 없다.

II. 영국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감독체계

1. 공인전문직협회(RPBs)와 지정전문직협회(DPBs)

영국에서 변호사,⁸⁾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으로 구성된 대략 15,000개 이상의 전문직회사들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체계에서 공인전문직협회(Recognised Professional Bodies; 이하 RPBs)로 알려진 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 금융서비스를 수행해왔으며, FSA는 이러한 RPBs를 승인하고 감독해왔다. 즉, 대다수의 전문직회사들은 본연의 업무로서 금융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으나, 그들의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RPBs의 인가를 받아왔을 뿐이다.

1986년 금융법 체계에서 공인규제기구(recognised bodies)인 RPBs는 전문직협회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인가해왔으나, FSMA 체계에서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에 따른 인가(authorisation)를 종결짓고, 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회사들이 단일 법적규제기구인 FSA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규제되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문직서비스로부터 비롯한 단순한 투자자문 및 주선과 이에 대한 보완관계와 같은 규제대상업무를 한정된 범위만을 수행하는 전문직회사들은 FSA로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인가받는 것을 마치 규제 강

화로 인식하여 일부 전문직회사의 반발도 생기고 있다.

DPBs는 대다수의 전문직회사들이 해당 DPBs의 규제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들 전문직서비스에 상호보완적이거나 이로부터 기인하는 단순한 규제대상업무를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에게 투자상품(investments)을 제공하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중개업자 및 펀드매니저 등과 같은 주요 금융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이러한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가받은 전문직회사와 적용면제된 전문직회사 간의 서로 상이한 규제 적용으로 인해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규제권한 간의 효과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문직협회에 대한 금융 감독체계

1990년대 후반 영국 정부는 새로운 금융감독 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⁹⁾에 따라 2000년 금융통합법인 FSMA를 제정하여 금융 감독체계를 단일화하고, 은행, 증권 및 보험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권역에 대한 감독권한을 FSA로 일원화하였다.

전문직회사에 대한 감독체계는 1986년 금융법 체계와 FSMA 체계 간에 서로 상이하다. 1986년 금융법 체계에서는 공인규제기구인 RPBs가 전문직회사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 수행을 인가하고, FSA는 이러한 전문직협회를 RPBs로 공인

8) 영국에서 변호사는 크게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s)로 구분된다. 법정변호사는 보통 소송과 관련하여 조인을 하거나 변론을 하는 반면, 사무변호사는 간단한 계약서 작성부터 금융, 국제무역, 보험해상 및 환경 등과 같은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서비스 제공은 사무변호사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김현수·김미숙, 2003).

9) 영국의 금융시장은 1997년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권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규제체계 또한 금융권역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베이링(Barings)의 도산, 연금판매 스캔들 등으로 인해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시장 자율에 기초한 금융 감독정책은 사실상 실패하게 되고, 투자자보호도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치보다 미흡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즉, 1986년 제정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체계의 2단계 구조(two-tier system)로 인한 금융감독의 비효율성과 금융권역 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결국 새로운 금융감독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고 감독해왔다. 그러나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회사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가 해당 DPBs의 규제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FSA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며, 재무부는 이러한 전문직협회를 DPBs로 지정하게 된다.

2.1 1986년 「금융서비스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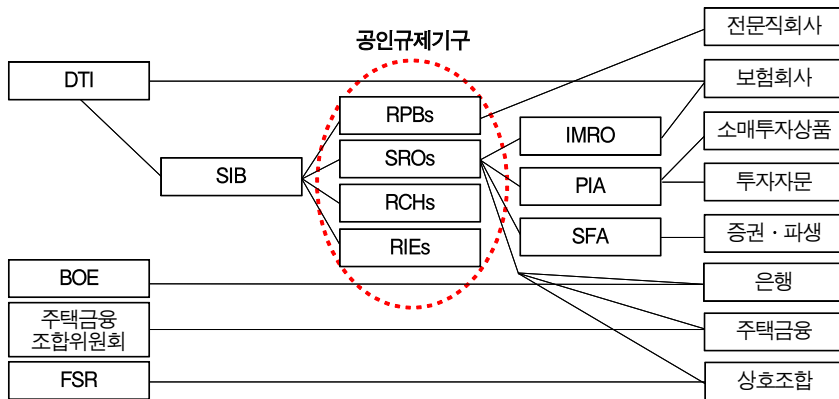
1986년 금융법 체계에서는 시장의 최적규제가 자율규제라는 인식하에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책임하에 SIB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가 설립되고, 이 SIB의 통제하에 SROs(Self-Regulation Organizations), RPBs, RIEs(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s) 및 RCHs(Recognised Clearing Houses) 등 4개의 공인규제기구(Recognised Bodies)를 두

게 되었다.

4개의 공인규제기구 중 RPBs는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와 그다지 관련이 없는 전문직회사가 해당 RPBs로부터 발행된 인증서(certificate)를 가지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 및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2 2000년 FSMA 체계

현재 FSMA 체계에서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회사들은 은행, 증권, 및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FSA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데, 재무부(Treasury)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문직협회인 DPBs가 해당 회원인 전문직회사들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1986년부터 2000년 이전의 영국 금융시장 감독체계

III. 영국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

1. FSMA Part 20의 구성

FSMA Part 20은 총 9개 조항(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FSA의 일반적 의무, 전문직협회의 지정, 일반적 금지에서의 면

제, 자문 및 일반적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업자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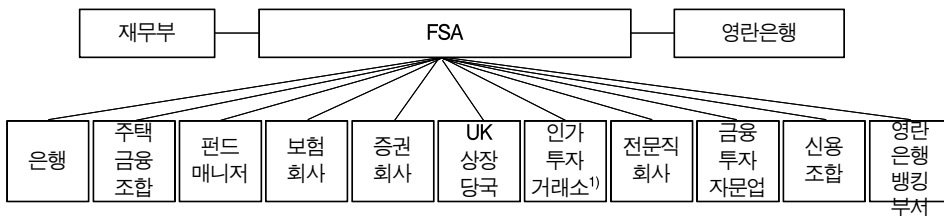
2. 일반적 금지에서의 면제

FSMA의 Part 20에서는 인가업자(authorized person)가 아니라 적용면제업자(exempt person)인 전문직회사의 규제대상업무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취급한다.

규제대상업무들은 FSMA 제326조¹⁰⁾의 근거로 지정된 전문직협회인 DPBs가 제정한 규칙(rule)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즉 이 규제대상업무는 전문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재무부가 제정한 명령에서 배제된 업무가 아니며, 전문직협회 회원인 전문직종사자 및 전문직회사는 고객¹¹⁾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금전적

보수 또는 이익을 고객 이외의 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수성(incidental)성 점검을 통해 전문직종사자의 전문적서비스 제공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2000년 이후의 영국 금융시장 감독체계

주: 인가투자거래소는 인가된 결재소를 포함
 자료: 심재승(2005) 재인용

2.1 일반적 금지로부터 적용 면제되기 위한 조건¹²⁾

FSMA 제327조는 인가받지 않은 전문직회사들이 특정하게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하는데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들을 취급한다. 일반적 금지에서 인가받지 않은 업자는 규제대상업무 수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일반적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첫째, 전문직종사자 혹은 이들로 구성된 전문직회사는 DPBs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적서비스 제공은 전문직종사자나 전문직회

사들이 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업무수행상 생기는 것이라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수수료¹³⁾를 고객 이외의 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특정한 전문적서비스를 특정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해 규제대상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러한 수행행위를 거절해야 한다. 다섯째, 수행중인 규제대상업무는 재무부명령(Treasury order)에서 배제된 업무¹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여섯째, 적용면제업무와 관련된 규제대상업무 이외의 업무는 전문직종사자 또는 전문직회사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10) 전문직협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11) FSMA Part 20에서 “고객(clients)”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FSMA 제328조 제(8)항)

- (a)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직협회 회원인 전문직종사자가 제공하는 어느 한 쪽의 서비스를 현재 혹은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용을 생각하고 있는 자
- (b) 다른 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그것에 기인하는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c) 대리 또는 수탁자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입을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12) Michael Blair, 『Blackstone’s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p.234.

13) “수수료”란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수 또는 다른 여타 이익 등을 의미한다.

유일한 업무이어야 한다.

2.2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수성 점검¹⁵⁾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수성 점검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첫째, FSMA 제327조를 위반한 경우라면, 일반적 금지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FSMA 법 집행과 관련하여 FSA는 정상적으로 적용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동법 제332조에 의해 보장된 점검방법으로, DPBs는 규제대상업무가 전문적 서비스로부터 기인하거나 또는 이의 제공이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FSA로부터 ‘제한된 업무규칙(restricted activity rule)’을 승인받는 것이다. 따라서 FSMA에서는 전문적 규율(professional discipline)에 대한 중요성도 금융서비스의 부수적 업무 위반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¹⁶⁾

또한 FSMA Part 20에 의거하여 규제받는 전문직회사들은 전문적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자에게 투자권유를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오직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와 관련되었을 경우이고, 또한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가 전문적서비스 제공에 부수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지정전문직협회(DPBs)

전문직협회 회원들은 1986년 금융법 체계에서 RPBs로부터 인가를 받아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해왔으며, FSMA 체계에서도 인가를 받은 후 이러한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SMA 제326조에서는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직협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전문직협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직협회는 해당 회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 수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규칙(rul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각 전문직협회 회원들은 법령에 근거한 규칙 및 공인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1986년 금융법 체계에서 요구하였던 조건과 거의 유사하며, 기존의 RPBs는 FSMA 체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3.1 전문직협회의 지정

영국 재무부는 FSMA Part 20의 목적에 비추어 전문직협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협회를 DPBs라고 한다.¹⁷⁾ 영국에서는 현재 10개의 DPBs¹⁸⁾가 재무부 명령¹⁹⁾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14) FSMA 제327조제(6)항에 의하면, 적용면제업무인 것과 관련한 규제대상업무 이외의 업무는 전문직협회 회원인 전문직종사자 혹은 전문직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유일한 규제대상업무이어야 한다.

15) Michael Blair, op. cit, pp. 234-235.

16) Michael Blair, op. cit, p. 234.

17) FSMA 제326조제(1)항 및 제(2)항.

18) 영국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England & Wales), 스코트랜드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Scotland), 북아일랜드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Northern Ireland), 영국공인회계사회(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스코트랜드공인회계사회(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Scotland), 아일랜드공인회계사회(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Ireland), 특허공인회계사회(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보험계리사협회(The Institute of Actuaries), 부동산양도전문변호사회(The Council for Licensed Conveyancers) 및 왕립직산협회(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19) 이러한 전문직협회들은 FSMA 2000 Order 2001(SI 2001/1226), FSMA 2000(Amendment) Order 2004(SI 2004/3352) 및 FSMA 2000(Amendment) Order 2006(SI 2006/58)의 법률을 근거로 지정되었다.

3.2 전문직협회로 지정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재무부는 어떤 단체가 기본 조건(basic condition) 및 추가적 조건(additional conditions)을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그 단체를 전문직협회로 지정할 수 있다(FSMA 제326조제(3)항).

3.2.1 기본 조건

기본 조건이란 전문직협회로 지정된 단체들은 그들 회원들이 적용면제가 되는 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rule)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²⁰⁾ 다시 말해서, FSMA 체계에서 전문직협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칙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재무부는 이러한 DPBs 규칙에 관한 실체, 효력 및 범위에 대해서 질적인 검증(qualitative test)을 하지는 않는다.

3.2.2 추가적 조건

전문직협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이외에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추가적인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추가적 조건의 충족이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²¹⁾ 첫째, 전문직협회는 어느 한 쪽의 법령(enactment)에 따라 전문직협회 회원의 실무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전문직협회 회원은 특정한 기능의 행사 또는 특정한 사무소의 개설 등을 위해 어느 한쪽의 법령(enactment)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전문직협회는 어느 한쪽 법령(enactment)의 목적에

비추어 공인²²⁾되어야 하고, 그 공인이 철회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전문직협회는 영연방 이외의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 국가에 설립되어 있다면, 영연방에서 요구하는 바로 직전의 세 가지 조건에 상당하는 조건을 그 국가에서도 갖추어야 한다.²³⁾

따라서 전문직협회들은 이러한 추가적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전문직종사자 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전문직종사자들의 특정한 기능에 대해 규제할 수 있고, 또한,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등 영연방 법령(enactment)의 목적에 비추어 공인받을 수 있으며, 영연방 이외의 EEA 국가에 설립되어진 경우라도 영연방에서 동등하게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4. FSA의 역할

FSMA 제325조에 따르면, FSA는 DPBs가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에 대한 수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방법과 이러한 적용면제 규제대상업무를 회원들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한다. FSA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DPBs와 정보의 공유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를 협력해야 한다.

만일 FSA가 특정 DPBs 또는 DPBs의 감독 및 규제 대상인 특정 전문직회사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할 경우, FSMA Part 20하에서 FSA는 전문직협회(professional body)를 통해 제327조제(1)항에 포함된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를

20) FSMA 제326조제(4)항.

21) 추가적 조건에서 “법령(enactment)”은 스코틀랜드의회법(Act of the Scottish parliament), 북아일랜드법(Northern Ireland legislation) 및 종속법(법률, 스코틀랜드의회법, 혹은 북아일랜드법의 어느 하나에 기하는지에 관계없음)을 포함한다(FSMA 제326조제(6)항).

22) “공인된(recognised)”은, 영국 국무장관(a Minister of the Crown), 스코틀랜드 장관, 북아일랜드 장관 및 북아일랜드국 또는 그 국장(a Northern Ireland department or its head)에 의해 공인된 것을 말한다(FSMA 제326조제(7)항).

23) FSMA 제326조제(5)항

철회할 수 있고, 특정된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에 한해 적용면제를 철회할 수도 있다. 즉, FSA는 고객의 이익이 보호되어 진다고 확신하는 동안에만 일반적 금지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FSMA 제328조제(7)항에 근거하여 FSA는 다음의 사항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DPBs가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부수적 업무에 관한 규칙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지에 대한 여부, 둘째, 관련된 적용면제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준법감시 운영(complaints-handling) 여부, 셋째, 적용면제업무 수행시 위법행위로 발생된 고객 손실에 대한 시정 요구를 위한 효과적인 처리 여부, 넷째, DPBs와 FSA의 협력 관계 여부 등이다.²⁴⁾

FSA는 제327조에 의거해 특정 전문직회사의 직원이 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특정 전문직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전문직회사의 직원은 반드시 업무수행에 관한 인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되거나, 규제대상업무의 전체보다는 한정된 범위만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FSMA Part 20 체계에서 일반적인 규제 및 철회에 관한 절차는 FSA의 규칙제정절차(rule-making procedure)와 유사하다. 특정 전문직협회에 대한 규제 및 철회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비용편익분석(FSMA 제330조제(10)항)²⁵⁾이 수반되어야 하고, 항의(representation)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문절차(consultative procedure)의 지연으로

고객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FSA는 자문절차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다.

FSMA 제3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329조에 근거하여 FSA는 해당자에게 명령 제정을 제안하는 경우에 경고통지(warning notice)²⁶⁾를 해야 하며, 명령 제정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통지(decision notice)²⁷⁾를 해야 한다. FSA는 특정 전문직종사자에게 우려감을 표명한다면, 특정 전문직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제재명령을 가해 해당 전문직종사자가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FSA의 우려가 전문직회사라면, FSA는 이 회사에 직접적인 제재를 내리거나 해당 DPBs에게 감독 책임을 묻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직회사가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전체 위험의 크기와 FSA 및 DPBs 규정에 따른 제재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조치할 수 있다. FSA는 권한을 행사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 DPBs와 긴밀히 연락해야 하며,²⁸⁾ 금융서비스시장심판소(Financial Services Markets Tribunal)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들도 있다.

5. 적용면제에 관한 공시²⁹⁾

적용면제업자는 인가업자와는 달리 일반적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스스로를 그러한 자라고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24) Michael Blair, op. cit, p. 236.

25)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분석과 비용의 견적을 말한다.

(a) 제안된 지령

(b) 제(5)항(b)호(지침 초안의 상세함에 비용편익분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발효된 지령

26) FSMA 제331조제(1)항에 의하면, 경고통지는 제안된 명령의 조건이 기재되어야 한다.

27) FSMA 제331조제(2)항에 의하면, 결정통지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명령이 적용되는 자가 지명되어 있을 것

(b) 명령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것

(c) 명령으로 지명되어 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

28) Enforcement Guide 16.9.

29) Michael Blair, op. cit, pp. 236~237.

할 수가 없다.³⁰⁾ 적용면제업자는 그들 고객에게 반드시 FSMA 상에서 인가받지 않은 업자라는 사실과 인가업자의 고객과 비교하여 FSA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적용면제 전문직회사는 적용면제 적법회사로서 인가업자가 아니라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규제대상업무의 세부내역과 업무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해당 DPBs 및 DPBs의 의견서(statement)³¹⁾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 인가된 전문직회사

전문직회사들은 금융서비스 업무가 부수적이 지 않거나, 본연의 업무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FSMA 제327조에 근거한 규제대상 업무에 대해서 적용면제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FSA의 인가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고, FSA의 규칙 및 지침³²⁾도 준수해야만 한다. 즉, 전문직회사는 인가업자로서만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전문직회사들 가운데 인가업자보다 적용면제업자의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FSA는 규제대상업무를 부수

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직회사들에게 제327조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면제하여 인가업자인 전문직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다.³³⁾

IV.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1.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업무내역 현황

국내에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변리사 및 감정평가사 등 수많은 전문직종사자들이 있다. 이들 대다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인 전문적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M&A 자문 및 기업금융, 기업공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비롯한 구조화금융 등의 부수적인 금융서비스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국내 주요 전문직종사자들의 업무내역을 본연의 업무와 부수적 업무로 구별하여 나타낸 것이다.³⁴⁾

<표 1> 국내 주요 전문직종사자들의 주요 업무내역

	본연의 업무	부수적 업무
변호사 (법무법인)	민사 소송 업무, 형사 소송 업무 기업 관련 소송 업무(경영권분쟁, 증권·금융분쟁) 구조조정·회생·파산 행정소송	M&A, 기업공개 및 증권발행, 자산운용,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해외투자, 세무조사, 입법자문, SOC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회계사	1. Assurance	1. Consulting

30) FSMA 제333조.

31) DPBs가 해당 회원들의 규제대상업무 수행에 대해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로서, 여기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준법감시 절차(complaints mechanisms)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한다.

32) FSMA Part 10, Rules and Guidance.

33) Michael Blair, op. cit, p. 237.

34) 홈페이지에 제시된 국내 전문직종사자들의 업무내역은 본연의 업무와 부수적 업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어, 각 전문직본연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주식 인수 및 매각, 투자자문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부수적 업무로 분류하였다.

<p>(회계법인)</p>	<p>회계감사, IFRS 준비 및 전환, 재무회계 자문업무, 해외 상장 및 자본시장관련 서비스, 비재무적 성과 및 보고관련 서비스, 준법감시 및 규제관련 서비스,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 내부통제 및 절차에 대한 인증 서비스, 전산감사업무, SOX 자문업무, 지속가능보고 자문업무, 기업지배구조개선 자문업무, XBRL</p> <p>2. Tax</p> <p>구조조정 세무자문, 부동산투자 및 개발 세무자문, 이진가격 서비스, 세무진단 서비스, 세무조사지원 서비스, 예규질의 서비스,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불복 서비스, 해외투자 관련 국제조세 및 투자구조 자문, 국내투자 관련 서비스, 해외과건출무선 서비스, 관세 자문, 비영리법인의 세무자문, 상속 및 증여 절세 Planning</p>	<p>기업재무, 기업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운영 및 전략, 기술</p> <p>2. Deal Business</p> <p>기업금융 및 M&A 자문, 매도 및 인수를 위한 기업/사업 실사, 프로젝트 자금조달(PF) 및 부동산 자문, 가치평가 및 가치증대 전략 수립 자문, M&A 전략 및 인수 후 가치증대 자문 업무, 분쟁관련 조사 및 분석 자문,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자문</p>
<p>보험 계리사</p>	<p>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p>	<p>퇴직연금 상품 설계 및 자문</p>

자료: 국내 주요 법무법인, 회계법인, 보험계리사법인 홈페이지에 나온 업무(practices)를 참고, 정리함

2. 자본시장법상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

국내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의 전문직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기업금융, M&A 자문,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같은 구조화금융의 자문 등 사실상 투자자문업을 부수적인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다.³⁵⁾ 그러나 2008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문직종사자들의 이러한 업무를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투자에 관한 자문이 수반되

는 경우가 많으나,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전문직종사자들이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투자자문업³⁶⁾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³⁷⁾ 이러한 전문직종사자들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그 부속단체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직종사자들이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³⁸⁾

35) 각 전문직군에 대한 국내의 감독체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변호사는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로서 금융관련분야가 들어있으며, 변호사는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36)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37) 변호사, 변리사 등에 대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 시행령 제7조제3항제9호, 및 제4항제3호마목).

38) 김진석·정순섭(2009)

현재 전문직종사자의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는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보호에 대한 조항이 미흡한 실정이다.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 약정과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직무제한 규정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자보호 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⁹⁾

V. 결론 및 시사점

1986년 「금융서비스법」 체계에서 공인규제기구(recognised bodies)인 RPBs는 전문직협회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에 관한 수행 사항을 인가하여 왔으나, FSMA 체계에서는 자율규제 기구에 의한 인가(authorisation)를 종결하고, 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회사가 단일 법적규제 기구인 FSA로부터 인가를 받고 규제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FSMA Part 20에서는 동법 제19조의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협회 회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면책조항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적용면제규제대

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들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반드시 부수적으로 행해야 한다. FSMA에서는 영국 재무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DPBs는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class)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direction)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FSA는 적용면제업자인 전문직회사 가운데 일부 회사들이 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fit and proper)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전문직회사에 대한 적용면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영국의 금융통합법과 유사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들을 통합한 「자본시장법」이 2008년 2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업무가 본연의 업무와 부수적 업무로 사실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투자자문과 같은 업무를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39)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제공은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전문직종사자들이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론상으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구축되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자본시장법」에 포함된다면 이해상충 방지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김건식·정순섭(2009), *자본시장법*, 박영사.
2. 김현수·김미숙(2003),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보고서*, 03-11.
3. 민재기(2007), “영국의 금융개혁(Big Bang)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금융감독원 조사연구리뷰*, 제22호, 1-21.
4. 박진호(2009), “최근 영국의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 운영방식 개편과 시사점,” *한국은행 한은조사연구*, 2009-6.
5. 심영(2003),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22(2), 9-43.
6. 심재승(2005), “영국 금융규제감독시스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유럽연구*, 제21호, 267-298.
7. 심재승(2004), *영국 금융시스템의 경제학*, 세창출판사.
8. 이성복(2004), “영국의 금융검사·감독체제,” *금융감독원 조사연구리뷰*, 2004년 봄호, 1-41.
9. 임재연(2010), *자본시장법*, 박영사.
10. Blair, M.(2009), *Blackstone's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11. Blair, M., Walker, G. and Purves, R.(2009), *Financial Service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2. FSA(1999), The FSA's regulation of professional firms.
13. FSA(2000), The Exempt Professional Firms Sourcebook.
14. FSA(2001), The Professional Firms Sourcebook.

Abstract

Legal Study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s a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Based on the 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Systems–

Park, Tae-Jun* · Park, Chang-Wook**

UK 「FSMA」 provides a safe harbour for members of professions, which are lawyers, accountants, and actuaries in their provision of certain financial services, despite the general prohibition, the professions carry on exempt regulated activities. In particular,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 which professional bodies are designated by the Treasury, must have rules and have to supervise and regulate their members those activities by rules. Also, the FSA must keep itself informed about the role of DPBs, and may make directions concerning the safe harbour in relation to particular classes of persons of different descriptions of regulated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Korea 「FSCMA」 explicitly excep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professions to investment adviser without regard to mainstream financial services activities or incidental activities. Under 「FSMA」, if the professions conduc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s mainstream activities, they must be authorized person and even if their activities is incidental, they have to comply with exemption sec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prepare the legal safeguards abou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professions for the investor protection.

Key Words: FSMA, professions, professional firms, professional services, exempt regulated activities, safe harbour, RPBs, DPBs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Changshin University, tjpark@cs.ac.kr

** Professor(Corresponding Author), Dept. of Tax and Accounting Information, Suwon Science University, cwpark@ssc.ac.kr